사단법인 군인자녀교육진흥원 정관

1차 개정, 2016.03.01.
2차 개정, 2017.03.01.
3차 개정, 2017.05.16.
4차 개정, 2021.02.24.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군인자녀교육진흥원”(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라 한다. 영문으로는 "Institute for Military Children Education Support" 으로 표기한다.

제2조(목적) 군인자녀 교육진흥원은 다음을 목적으로 한다.
1. 군인자녀(중·고교 재학생) 및 전몰·순직군경 유자녀에 대한 교육지원 및 학술연구
2. 군인자녀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
3. 군인복지기본법에 의하여 설립된 군인자녀학교에 대한 지원
4. 군장병 및 군인자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군부대 지원(2017.05.16. 3차개정)

제3조(소재지)
1. 법인의 주사무소는 경기도 내에 둔다.
2. 필요한 경우 국내외 지역에 분사무소(지부)를 둘 수 있다.

제4조(사업) 법인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군인자녀 및 전몰·순직군경 유자녀에 대한 장학금 등의 학자금지원
2. 군인자녀 및 전몰·순직군경 유자녀 관련 연구사업
3. 군인자녀 진로설계, 리더십 개발, 어학연수, 학력향상 프로그램 시행
4. 군인자녀 및 학부모에 대한 심리상담, 진로 및 진학상담
5. 군인자녀학교 재학생 장학금지원, 교사연구지원, 시설확충 등 교육여건개선
6. 군부대 위문 및 지원 활동(2017.05.16. 3차개정)
7. 국방가족자녀(전몰·순직군경 유자녀 포함) 온라인학습 프로그램 운영(2021.02.24, 4차개정)
8. 기타 법인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5조(수익사업)

① 법인은 제4조에 규정한 목적사업의 수행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본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② 수입사업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분리하여 계리한다.

제2장 회원

제6조(회원의 자격)
① 회원은 법인의 설립 취지에 찬동하여 소정의 가입절차를 마친 자로 한다.
② 정기적인 회비를 납부하는 회원은 대의원으로 한다.
1. 개인회원 : 월 5만원 이상의 회비를 2년 이상 납부 또는 120만원 이상의 후원금을 납부하는 회원
2. 법인회원 : 500만원 이상의 후원금을 납부하는 회원
③ 이 정관이 정한 것 외에 회원의 자격 및 회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회원의 권리)
1.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법인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2. 회원은 법인의 임원 피선거권을 가지며 총회에 참석하여 법인의 활동에 관한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8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가진다.
1. 법인의 정관 및 제 규약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3. 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

제9조(회원의 탈퇴와 제명)
① 회원은 이사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② 회원이 법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또는 1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③ 탈퇴 및 제명으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

제 3 장 임 원

제10조(임원의 종류 및 정수)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 5인 이상 20인 이하(이사장 1인 및 상임이사를 포함한다)
2. 감사 2인 이하

제11조(임원의 선임)
① 법인의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다만,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호선한다.
②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임기만료 2개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하며, 임원이 궐위된 경우에는 궐위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③ 임원선출이 있을 때에는 임원선출이 있는 날로부터 3주 이내에 관할법원에 등기를 마친 후 주무관청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법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3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제14조(상임이사)
① 법인의 목적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상임이사 1명을 둘 수 있다.
② 상임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제15조(임원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2017.03.01. 2차개정)
② 임원은 임기 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임원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③ 임원의 임기변경은 정관 변경 당시의 이사도 해당이 된다.(2017.03.01. 2차개정)

제16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할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상임이사는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법인의 사무를 총괄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④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법인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

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게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법인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이사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4장 총회

제17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법인의 최고의결기관이며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제18조(대의원) 대의원은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본 법인의 임원
2. 제6조제2항에 해당하는 회원

제19조(총회의 구분과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2016.03.01. 1차개정)
③ 이사장은 이사회의 결의나 대의원 3분의 1이상 또는 감사가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청구한 때에는 총회를 소집해야 한다.
④ 총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각 대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2016.03.01. 1차개정)

제20조(총회의사 및 의결의 정족수)
① 총회회의는 반드시 재적대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② 총회의 의사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대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출석할 수 없는 대의원은 사전에 통지된 사항에 한하여 서면으로 표결할 수 있고, 다른 사원에게 표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

제21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사업실적 보고 및 결산내용의 승인
2.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의 승인
3. 정관의 변경
4. 임원의 선출 및 해임
5. 법인의 해산
6. 기타 주요사항

제22조(의결제척사유) 대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 5장 이사회

제23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제24조(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연 2회 반기별로 개최하고, 임시이사회는 감사 또는 이사의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 이사장이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이전에 일시, 장소, 안건 등을 명시하여 문서(전자문서 포함)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5조(서면결의)

① 이사장은 이사회에 부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이사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 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사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26조(의결 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이사장이 결의한다.

② 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제27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주요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및 사업실적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4.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의 승인
5. 정관변경 및 법인 해산에 관한 사항
6.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7. 기타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한 사항

제6장 재산과 회계

제28조(재산의 구분) 법인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한다.
1. 기본재산은 최초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한다.
2. 운영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29조(기본재산의 처분) 법인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용도 변경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의무의 부담, 권리를 포기 하고자 할 때는 이사회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30조(수익금) 법인의 수익금은 회원의 회비 및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31조(회계연도) 법인의 회계 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2조(재원)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
1. 회비
2. 각종 기부금
3.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보조금
4. 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
5. 기타 수입금

제33조(재원사용의 금지 및 공개)
① 수입은 회원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하고 군인자녀 및 전몰·순직군경 유자녀의 교육지원을 위하여 사용하며,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하는 등 정치활동에 사용하지 않는다.
②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후원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다음연도 3월말까지 공개한다.

제34조(예산편성 및 결산)
① 법인은 회계연도 1개월 전에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승인을 얻는다.
② 법인은 사업실적 및 결산내용을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제35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년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36조(임원의 보수)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37조(차입금) 법인이 예산외의 의무부담이나 자금의 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7장 사무부서

제38조(사무국)
①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법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 사무국장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하거나 해임한다.
④ 사무국의 조직, 운영 및 보수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8장 보 칙

제39조(법인의 해산결의)
①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법인을 해산할 때의 잔여 재산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 법인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하도록 한다.

제40조(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출석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 후 총회에서 재적대의원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1조(업무보고) 다음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와 당해연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를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재산목록,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 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42조(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국방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43조(규칙제정) 이 정관이 정한 것 외에 법인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제44조(회의록)
① 총회 및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이사장 및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이사장은 회의록을 법인의 주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법인 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설립자의 기명날인) '군인자녀 교육진흥원'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발기인 전원이 기명날인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21 년 02월 24일부터 시행 한다.

사단법인 군인자녀교육진흥원

(폐회시간 2021. 02. 23. 12:10)

군인자녀교육진흥원	이사회	이사장	김 태 영
		상임이사	홍 두 승
		이 사	이 춘 호
		이 사	권 태 신
		이 사	남 상 덕
		이 사	박 원 호
		이 사	반 원 익
		이 사	김 창 섭
		이 사	심 규 선
		이 사	임 병 훈
		이 사	김 형 철
		이 사	이 기 식
		이 사	이 강 호
		이 사	최 헌 규
		이 사	강 호 갑